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97190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우균, 전기현, 최자림, 우영은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이세희, 이기운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
담당변호사 김명식, 장보근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피고들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피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 기타 영업장소,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2. 피고들은,

- 가. 별지 2 목록 기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를 피고들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피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 기타 영업장소,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시스템을 폐기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인도하라.

-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제특송사업,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유지보수, 컨설팅업, 화물운송업, 국제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2011.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일본 현지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에 대한 저작권 등록

1) 피고 회사는 2016. 2. 5. 글로벌 수출 전자상거래 솔루션 E을 개발하여 F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솔루션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B2B 창고 관리 솔루션 G, 수입 통관 배송 지원 솔루션 H에 관한 각 저작권등록도 마쳤다.

2) 피고 회사가 E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시스템 명세서에는 위 프로그램은 출고관리, 세관신고 관리, 배송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수출하는 국가에 맞게 언어, 기준통화를 설정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 중단

1) 원고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일본으로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자들로부터 국내 창고로 물품을 입고 받아 이를 선적하고 일본 현지 택배회사 T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 회사에 국내 물류배송 서비스에 일본으로 배송하는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경 원고와 원고의 일본 소재 본사 J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2 기재 전자상거래 배송관리 시스템(이하 '이 사건 배송시스템'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1. 17.경 원고 회사 담당자 피고 D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적용 시스템 E,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건당 100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배송시스템의 사용료를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5.말경까지 '전자상거래 배송관리 시스템 사용 계약서'의 초안을 놓고 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제공받은 이후인 2019. 4.경부터 2021. 2.경까지 시스템 사용료 합계 약 1,381,948,033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1. 2. 4. 원고의 대표이사 및 담당자에게 '원고는 그 관계를 무시하고 상의 없이 피고 회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고객사에게도 위 시스템을 배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2021. 3. 4.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3. 4. 3.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 혐의로, 피고 C을 업무상배임, 공갈 혐의로, 피고 D을 업무상배임, 전자기록등 손괴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25. 11. 3.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9, 29호증, 을가 제1, 2, 5, 8, 20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배송시스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배송시스템에는 별지 1 기재 ① 일본 통관 키워드 변환 데이터베이스, ② 원고 고객사 데이터베이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화체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영업비밀이 화체된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의로 2020. 4.경부터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2020. 9.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보를 각 제공하고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 C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 D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설령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정보의 사용행위를 하지 않고 위 행위로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저작권법 제12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정보는 개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원고는 데이터 보유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위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복제 등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사용 등을 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으로서의 불법행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나 다음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고객사 K에게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통상 운임 대비 낮은 운임을 적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통상 운임과 K이 지급한 운임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고객사 M의 주문관리시스템 오더맨에서 배송사를 원고가 아닌 L로 변경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삽입하는 등 원고의 고객사를 탈취하고자 하였고, L에게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D은 L로 이직한 후 주식회사 N에 연락하는 등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L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D의 전자기록등손괴 및 전자기록등 손괴업무방해의 불법행위

피고 D은 원고 회사에서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자신의 컴퓨터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 '고객사별 배송요금', '고객사의 배송관리 매뉴얼', '견적서', '물류사 단가 분석자료' 등 450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정보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정보의 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정



보가 가지는 교환가치 상당액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폐기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각 일부만을 나열하면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자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중 고객사의 이름, 연락처 중 일부는 피고들의 주



장과 같이 일본 현지 판매 사이트에서 확인되기도 하는 점, 피고 회사가 개별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여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배송시스템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 및 그 직원들과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내지 고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직원인 피고 D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고,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등을 징수한 바 없다.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5, 24, 27, 28, 36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납품한 이후에도 제3자 L에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L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배송시스템과 L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대조하여 보면, 위 각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 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시스템 사이에 회원가입 및 배송조회 웹페이지 URL, 웹페이지 중 운송장 출력 기능의 구성 내용 등 일부 유사한 부분(갑 제28호증)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와 L의 영업 방식과 내용이 유사한 이상 해외 운송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송시스템의 기본 구성 및 기능이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구비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L의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L의 배송시스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L로 이직한 이후 원고의 고객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배송시스템 'O'를 홍보하면서 위 배송시스템에 가입을 권유하고, 회사에 대한 개인 정보를 회신하여달라고 요청한 점(갑 제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객사 일부가 L의 배송시스템 'O'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중 고객사의 과거 배송내역에 대한 정보도 영업비밀로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3자에게 원고의 고객사의 과거 배송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피고들이 2020. 5. K로 하여금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원고의 고객사로서 이용료(배송료)를 내고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이용한 것인바, K의 이러한 이용행위가 어떠한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개발한 M의 주문관리시스템에 선택가능한 배송사로 L이 추가 등록되었고, 원고를 배송사로 하여 주문된 거래의 배송사를 피고 회사가 L로 변경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삽입되었음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L에게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M에게 개발해 준 주문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일이고, 위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L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피고 D이 이직한 회사인 L에서 원고의 고객사 주식회사 N에 접촉하는 등 원고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채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



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하여 이 사건 정보를 만들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3. 다.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3. 다.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



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정보는 개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



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 통관 키워드 변환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건 배송시스템에 적용하는 외에 제3자의 배송시스템에 이를 복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중 피고 D이 복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D이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2011다6717(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의 존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5, 24, 27, 28, 34 내지 36호증, 갑 제



16호증의 1, 2, 을가 제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들이 K로 하여금 이 사건 배송시스템, 원고의 창고 등을 통상 운임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원고의 고객사로서 이용료(운임)를 내고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므로 그 이용료를 결정한 주체는 원고일 것이고 달리 피고 회사, C이 그 이용료를 결정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배송시스템을 조작하여 정상 이용료를 저렴한 이용료로 바꾸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고객사 M의 주문관리시스템에서 배송사를 원고가 아닌 L로 설정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몰래 삽입하고, 피고 D이 L의 영업을 위하여 N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L이 이용하는 이 사건 배송시스템 내 고객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원고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반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 주문관리시스템에 소스코드가 삽입되었다는 것과 이 사건



정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밖에 피고 D의 위 행위만으로 L이 원고 고객사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D의 전자기록등 손괴 및 업무방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존부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D을 전자 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① 피고 D은 퇴사 전 다른 직원에게 계약서 원본과 인수인계서를 전달한 점, ② 피고 D이 삭제한 파일 대부분은 다른 직원과 공유된 파일로 보이고 고객사별 배송요금은 이 사건 배송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점, ③ 퇴사 전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한 것이라는 피고 D의 주장이 수긍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25. 1. 23.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이 사건 정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 밖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9.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0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판사 김선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0

별지 1

목 록

- ① 일본 통관 키워드 변환 데이터베이스
- ② 원고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0

별지 2

목 록

일본향 배송 기능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배송관리 시스템